

제434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8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 증인 고발의 건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1)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81)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4)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7)
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76)
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0)
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9)
1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3)
1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0)
1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41)
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28)
1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3)
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8)
1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6)

상정된 안건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1) 3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81) 3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4) 3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7) 3
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76)	3
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0)	3
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9)	4
1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3)	4
1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0)	4
1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41)	4
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28)	4
1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3)	4
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8)	4
1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6)	4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38
2. 증인 고발의 건	38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사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 위원장직을 맡게 된 데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법사위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검찰·사법 개혁 입법들이 국민들과의 공감대 속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을 하나하나씩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하에 정치검찰이 무너뜨린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법사위는 모든 국회 입법의 관문입니다. 민생법안 하나하나가 이 자리를 거쳐 국민께 닿아 갑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민생경제 입법 적시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 역시 법사위의 중요한 소임입니다.

여야가 다르더라도 국민 앞에서만큼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안정을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한 국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 함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야 모든 위원님들께서 법사위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해 낼 수 있도록 법사위원장으로 먼저 일하고 또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점 법안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폭력범죄에서 공소시효·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 구광 사건에서 비롯되었듯이 다수 피해가 발생할 때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내용 등 그리고 고위험성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 그래서 전자장치 부착법에 관한 개정안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법사금융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 등이 주요 중점 법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이 법안들을 잘 통과시키겠다고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말씀드리고 국민들께 인사말씀드리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위원 있음)

○신동욱 위원 인사말이 이미 틀렸어요.

○위원장 서영교 예?

○신동욱 위원 인사말이 이미 틀렸다고.

○위원장 서영교 박수를 확실하게 쳐 주시지요.

(박수)

오늘 4월 1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추미애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김동아 위원님이 보임 되셨습니다.

새로 보임하신 김동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세요.

○김동아 위원 반갑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님을 대신해 법사위에 보임하게 된 서울 서대문구갑 김동아 위원입니다.

국회 상임위의 꽃인 법사위에 보임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로 윤석열 정부에서 부역한 정치검찰의 회유·협박·조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도관의 증언과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된 녹취록으로 박상용 검사가 신성한 국회 법사위에서 허위 증언을 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법사위에서 이런 윤석열 정부에 부역한 정치검찰의 뿌리를 뽑고 국민의 공수처로, 정치검찰이 국민의 공수처로 재탄생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내란범 윤석열과 절운하고 정치검찰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의사일정 3항부터 16항까지 14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1)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81)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4)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7)

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76)

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0)

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9)
1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3)
1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0)
1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41)
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28)
1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3)
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8)
1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6)

(10시27분)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6항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교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심정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박지원 위원 긴급동의인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 볼륨을 낮추든지 꺼버리든지, 너무 커요.

(웃음소리)

○위원장 서영교 알겠습니다. 제가 목소리의 조절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모처럼 박 위원님이 정말 올바른 소리 하시네요. 우리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여야의 요청으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발표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하고 보험료 연체금 등의 총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출국금지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므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법무부에 요청하게 할 필요가 있겠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이나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모든 이행강제 조치를 취한 이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 법에 따른 출국금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안은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사자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잡지 등 전파성이 큰 매체를 통한 사자 명예훼손은 가중하여 처벌하며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신설함으로써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행 명예에 관한 죄와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 등 수사절차는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형사법 체계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역사적·공적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지는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있으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거나 성립 범위를 축소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 형소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기소편의주의를 원칙적 기소법정주의로 전환하려는 취지로서 범죄가 경미하고 피의자가 반성하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불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불기소 시 검사장 및 상급 검찰청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소법정주의 도입은 검사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불기소 사유를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한 점, 기소법정주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형소법 전반의 검사 권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점, 상급 검찰청 장 승인 부분은 검찰청법상 지휘체계에 맞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형소법 일부개정안은 법원이 형사공탁 가능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해당 기간 내에 공탁하지 않은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공탁금을 회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이미 형사공탁의 경우 판결을 선고하기 전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공탁법은 피해자가 공탁물 수령 거절 의사를 통고한 경우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으며 최근 양형위원회는 기습공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양형 기준을 개선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혜진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한창민·박정훈·박은정·김용민·이인

영·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세사기,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경우에도 이 법상 특례를 적용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려는 이 법의 취지,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방식의 도입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한창민 의원안의 전세사기는 그 대상 범위가 광범위한 측면이 있고 박정훈·박은정·이인영 의원안은 일정 범죄를 부패범죄만 추가하고 있는데 해당 범죄수익의 환부를 위해서는 이를 범죄피해재산의 대상범죄에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그리고 제14항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제14항,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이 ‘중앙 외의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중심과 주변 지역이라는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아 ‘지방’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경우 지방균형발전 및 부정적 인식 개선이라는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현행법에서 법원의 의미를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을 포함한 상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고등법원, 대법원을 모두 포함한 상위 개념으로 오인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대한민국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와 같이 ‘지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지방분권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등 대부분의 법률에서 ‘지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통일성 측면에서 ‘지방’이라는 용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관찰소장의 수사를 위한 수신자료 열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의 대상을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에서 피해자 연령에 관계없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보호관찰소장의 수사를 위한 수신자료 열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2020년 12월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 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되는 것을 명백히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이해됩니다.

다음,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동종범죄 재

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개정안에 따라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대상이 확대되면 상당한 규모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이므로 2019년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제도의 도입 이후 이러한 인력 충원 및 재정 부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지침에 근거하고 있으나 공개되고 있지 않아 현행 제도가 적절하게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지를 국회 등 외부에서 감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진 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5항·16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제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콘텐츠 및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으로서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정의와 디지털제품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하여는 디지털제품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의 구체적인 요구 수준, 하자의 의미, 디지털제품 변경의 구체적 범위 등 그 해석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구체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사항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문화콘텐츠 이용자 보호 규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사업자 규제와 같은 기존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에 따라 디지털제품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기술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디지털제품의 특성을 고려하면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사항을 기본법인 민법에 규정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고 지연으로 손실을 입은 재판의 당사자가 국가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손실이 확인되면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선고 지연과 당사자가 입은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소송경제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보상하려는 손실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현행법에 따라

보상되는 손실 외 어떠한 손실을 의미하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고 손실보상 사건의 요건과 인과관계를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판단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체계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관의 업무 과중과 관련한 현실적·심층적 고려 없이 선고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면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소송당사자에게 선고 지연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선고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확인되면 별다른 제한규정 없이 보상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의 재판 지연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나오셨습니다.

기우중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들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 하시겠습니까, 첫날인데? 다 하고 갈까요? 안 하실 분도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손 들어 주시면……

우선 나경원 위원님 먼저 손 드셨고 그리고 박지원 위원님 손 드셨고 박은정 위원님 손 드셨고 광규택 위원님 손 드셨고 김용민 위원님 손 드셨고 조배숙, 최혁진……

그러면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간은 오늘 팬찮습니다. 대체토론 시간을 열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경원 위원님 대체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먼저 서영교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추미애 위원장보다는 좀 더 공정한 법사위를 운영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요.

저희는 사실 법사위원장은 저희 당에 돌려주는 것이 맞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서 모든 법안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좀 더 공정하고 중립적인 회의 진행을 해 달라는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법안 중에서는 이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의 기소법정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의 행간에도 알 수 있듯이 이 기소법정주의는 지금 현재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하는 이 정부의 현재 정책과도 저는 위반된다고 봅니다. 이 건 결국 뭐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은 어떤 권한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법안, 기소법정주의라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소법정주의는 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기소하라는 것인데 기소를 하려면 이 수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이 검찰이 무조건 기소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은 이제 어떤 권한도 행사하지 말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순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태리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다. 결국 이 기소법정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검사의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검사의 역할은 단순한 기소자가 아니라 정당한 판결을 위해 관련된 모든 증거 요소를 수집할 의무가 있는 그런 사법기관이 되어야 된다.

결국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사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기소법정주의로 갔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검찰은 무조건 그냥 사건이 오면 기소하라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께서 한말씀씩 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여러 지적에 상당히 공감되는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소법정주의로, 물론 입법취지에 일면의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현행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변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기계적 공소제기로 인해 가지고 구체적 타당성이라든가 또는 실질적 정의 실현에 있어서 약간 곤란한 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 법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규정도 약간 구체적이지 못하고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기소편의주의인 이 형사소송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오히려 검사들은 수사에 대한 어떠한 권한을 갖지 않는다면 이것은 모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법무부장관께서 작년부터 수사·기소 분리 관련해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소신 있는 발언을 하셨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검찰이 완전히 해체되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 따로 결과 따로를 만드시지 말고 책임 있게 좀 일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최종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리인인 의원님들의 입법적 결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제가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경원 위원** 아니, 이것을 입법적 결단이라고 미루지 마시고……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들도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래서 법무부장관께서 역할을 좀 똑바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더 분발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행정처 권한대행께서는 이 기소법정주의로 바꾸는 것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종합적으로 면밀히 살필 부분이 많다는 의견입니다.

○**나경원 위원** 그 정도?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나경원 위원**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 부분

은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사권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박탈됐을 경우에는 이 기소법정주의하고 모순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법무부장관,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박상용 검사를 직무정지 했던데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나경원 위원 그 직무정지 사유가 뭐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동안 저희들이 고검의 인권침해점검 TF에서 확인한 결과 과거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발견됐습니다. 공범들을 분리하지 않고 또 수사 과정에서……

○나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TF팀의 발표가 먼저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직 이상의 징계에 해당할 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 경우는 사전에 직무정지도 할 수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굉장히 이상한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TF팀의 결과 발표는 없는데 직무정지는 그냥 한다, 그것도 검찰총장직무대행의 요청으로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절차의 위법성이 상당히 있다.

TF팀의 결론이 그렇게 날 것을 예상해서 직무정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TF팀의 결론을 듣지 않고 한 것하고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절차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한마디로 지금 급한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 이따 이 부분은 위증 고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용 관련해서는 법무부장관님, 다 점검하셨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들이 감찰을 해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수원지검에서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지금 도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공범들을 분리하지 않고, 그리고 연어회덮밥은 직접 수사관과 교도관이 1층에 가서 들고 올라왔다 이런 내용까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얼마 전에는 변호사하고 형량을 놓고 그러 낸 육성 녹취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직무배제 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 근거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한 자료도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먼저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이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평소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새로운 법사위원장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

다.

오늘 굉장히 좋은 게 나경원 위원이 굉장히 협조적으로 하니까 서영교 위원장 성공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박상용 검사는 검사입니까, 정치인입니까, 방송인입니까, 캄패입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검사입니다.

○박지원 위원 검사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윤석열이 대통령 할 때 뭐라고 했나 하면 ‘검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하면 그게 캄패지 검사냐?’, 이것으로 보면 박상용은 캄패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아직 검사인데, 직무집행이 정지됐다고 하더라도 현직 검사인데 거기에 대해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 물론 장관께서 직무배제 한 것은 잘했지만 제가 볼 때는 만시지탄이에요.

지금도 이 사람은 공무원이에요. 직무는 배제됐지만 검사예요, 장관 말씀대로. 공식적인 국회 기구인 국조특위는 증인 선서 거부하고 나가고, 불법적인 한 정당의 모임에 나가서 마치 청문회 하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을 보고, 또 방송만 나간다고 하면 그가 정치를 준비하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직무배제 할 게 아니라 고발·고소해서 장관은 응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하십니까, 더 하실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들이 특히 최근에 직무집행정지 결정 이후에 박상용 검사의 행동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철저하게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정말 완벽하게 저희들이 일을 처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너무 지연되게 절차를 진행시키는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아니,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하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런 일이 공직사회에서, 공무원 사회에서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 이 나라가 캄패 국가지, 있을 수 없잖아요. 아니, 현직 공무원이 국회는 무시하고 직위가 배제됐는데도 계속 방송에 나가서 자기 정치인으로 입문할 것을 준비한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미 어쨌든 직무집행정지가 중대한 징계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고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박지원 위원 그렇게 하면서 지금 박상용은, 제가 방송에 많이 나가는데 작가들이 그러데요. 물어보면 방송에 나오려고, 굉장히 좋아하고 나오게 해 달라고 자꾸 로비를 한대요. 이게 검사예요, 공무원이에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방송 출연 자체를 저희가 금지시킬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외……

○박지원 위원 아니, 왜 없어요? 공무원이……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게 직무적인 내용을 가지고 방송 가서 하는 것이 공무원 직무규정에 일탈되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습니다. 발언의 내용은……

○박지원 위원 발언 내용도 지금 다 알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출연 자체를 금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박지원 위원 자, 보십시오. 서민석—전 부장판사—변호사가 녹취록 전체를 검찰에 제출했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이재명 씨를 주범으로 해야, 그 사람 이화영 부지사를 종범으로 하고 그래야 보석, 추가기소 때 내가 봐줄 수 있다. 변호사는 피고인 입장에서 딜을,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체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다고 검사가 이재명 씨를 주범으로 만들어 주면 공범으로 해 주고 보석해 주고 추가기소 때 봐주겠다, 이건 엄격한 회유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드러난 내용으로는 그렇게 충분히 인식될 수 있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들이 필요한 절차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직무집행 정지가 됐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특별히 1분만 더 드리세요.

○박지원 위원 최근에 주진우 기자가 김건희 무당들 열 분 중에 다섯 분을 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걸 보면 대한민국이 무당 국가인데, 윤석열 위에 김건희 이걸 다 알아요. 김건희 위에 무당이 있어요. 그 위에 주진우 기자가 있다 생각했는데 지금 박상용 검사는 박상용 위에 검사장이 있고 법무장관이 있고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깡패 우두머리는 윤석열이다 이렇게 정의하는데 사실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관련해 가지고 이미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다 되고 있고요.

○박지원 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민정비서관도 아니고 공직기강비서관이 나타나서 이 쌍방울 수사를 지휘하냐고요. 깡패 우두머리는 윤석열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그러한 것을 나발 불고 다니는 박상용에 대해서 징계, 직무배제 해 놓고 감찰 기다린다, 이 자체가 저는 법무부 직무 유기다 이렇게 봐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닙니다. 감찰은 이미 시작하고 감찰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직무집행정지 그 이후에 그의 행동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함께 모아 가지고 적절한 절차를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걸 못 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당장 그걸 못 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살인범 기소해 놓고 계속 살인하고 다니도록 놔두는 거예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거하고 다릅니다.

○박지원 위원 다르지요? 다르지만 이걸 아니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도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계속해서 방송에 나와서, 불법적인 단체에 가서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공무원으로서의 기강 문란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장관이 조금 세게 하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기 때문에 직무배제를 시킨 겁니다.

○위원장 서영교 마무리해 주십시오.

장관님,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지금 감찰하고 계시고 그리고 인권침해점검 TF에서 또 점검하고 계시고 폐북에 한번 내용을 정리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으로, 공무원들이 언론이나 이런 데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부의 중요한 일, 자기네가 하는 중요한 일들을 알리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잘못된 것, 범죄행위, 지금처럼 문제가 있는 것을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중립의무 위반이고 공무원의 품위 훼손이고 등등으로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건지, 지난번에 박은정 위원도 제기하셨었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정리된 걸 보니 하고 있는 일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법무부장관 정성호 구체적인 감찰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신동욱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질의는 위원들 질의 끝나고 하시고요 그거 하 시려면 내려오세요, 여기로.

○위원장 서영교 아니, 이거는 확인을 하는 겁니다, 법무부장관님 확인.

○신동욱 위원 아니지요. 위원장님 그 질의 하시려면 끝나고 하세요.

○박은정 위원 진행하시잖아요, 진행.

○박지원 위원 진행하는 거 아니야?

○위원장 서영교 말씀해 보세요.

○신동욱 위원 아니, 왜 위원장이 끼어 가지고 추가질의를 합니까? 그거 하시려면 내려 오세요, 밑으로. 왜 위원장이 진행을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 서영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감찰은 지시하셨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서영교 저희가 오해를 정리하기 위해서…… 법무부장관께서는 감찰을 지시할 수 있고 감찰을 지시하셨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인권침해점검 TF에서는 인권침해를 점검하고 계시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전체를 다 조사하고 감찰해서 자료는 거의 확보되었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저희들이 가능한, 특히 어제 직무집행정지 이후의 그의 언행에 관련해서는 매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우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조배숙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조배숙 위원입니다.

우선 서영교 위원장님 법사위원장 되신 것을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보면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이 여기서 아주 강하게,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편파적으로 운영을 하셨는데 당대표가 되셨어요. 그리고 또 추미애 위원장은 정청래 위원장 못지않게 일방적으로 아주 그렇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제 경기도지사후보가 되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정치적 체급을 높이기 위한 디딤돌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법사위가 다른 위원회에서 볼 때 진행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혹시 그런 유혹을 느끼시지 않을까.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마 서영교 위원장님도 혹시 미리 여기 위원장 됐으면 서울시장후보가 됐을지도 모르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위원장 서영교** 안 안타깝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영교 위원장님.

그래서 앞으로 서영교 위원장님, 우리 법사위를 제대로 균형 있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만의 위원장도 아니시고요 전체에 대한 위원장이십니다.

정성호 장관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사실 지금 형사소송법 일괄적으로 손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여기 개개 법률이 작년에 발의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논의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전체적으로, 형사소송 일괄적으로 지금 개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사위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오래 논의해 주셔야 됩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다고 보고요.

자꾸 박상용 검사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상용 검사는 본인이 그 사건을 하겠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검사로서 배당이 됐기 때문에 했거든요. 그렇지요? 내가 그 사건을 하겠다고 해서 맡은 거 아니지 않을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확한 경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조배숙 위원** 무슨 소리예요?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배당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결재 라인이 있습니다. 주임검사가 있고 부장검사 있고 차장검사 있고 또 검사장 있고 다 결재 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박상용 검사만 완전히 혼자서 몰매를 맞는지 나는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저도 법사위 들어와 가지고 작년에 국정감사 때 이미 확정판결이 난 걸 가지고 다시 와 가지고 여기서 불러다가 또 얘기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을 한 것이 연어·술 파티 되기 이전에 이미 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쪽 재판이 됐고 그런데 나중에 진술 번복 문제, 연어·술 파티 이런 모든 게 또 되니까 그것도 고등법원에서 다 그 사안을 보고서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작기소 국정조사인가요? 결국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프레임에 따라서 지금 착착착 한 발짝 한 발짝 딱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박상용 검사 위증 고발하겠다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장관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정조사특위에서 박상용 검사가 선서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선서 거부한 것을 보니까, 그 입장문 좀 보셨나요? 제가 그것을 봤는데 구구절절이 틀린 게 아니에요.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재판에 관여하기 위해서 국정조사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 준용하게 돼 있어요. 박상용 검사는 지금 재판, 수사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거부를 했는데 거부한다고 뭐라고 하고, 마이크 뺏고 뭐라고 하고 이게 법사위에서 할 일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선서 거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어쨌든 검사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공직을 맡고 있는 박상용 검사가 선서 거부를 하기보다는 국회의 증감법에 의하면 또 증언 거부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상과 본인이 향후 재판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에 관련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서하고 증언하고 그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게 맞았던 게 아닌가. 다만 그 과정에서 본인이 그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데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지……

○**조배숙 위원** 아니지요. 이 사람은, 검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에요. 다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국정조사특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판에 개입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것은 본인의 판단이지 어쨌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의결해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조배숙 위원** 의결됐다고 해서 다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의결됐다고 해서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정당한 법인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조배숙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가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어서 더 말하고 싶지만 국정조사특위에서 이야

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전현희 위원님은 그 뒤에 오셨으니까……

○박은정 위원 먼저 하시게……

○위원장 서영고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전현희 위원님 하시고 박규택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은정 위원님 하시고 윤상현 위원님 하시고.

전현희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 장관님, 지난 6일에 법무부가 대북송금 사건 담당 검사인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조작기소를 한 검사에 대해서 법무부가 당연한 조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상용 검사는 정작 여기에 대해서 범치주의와 검사제도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대행이 이 제도 자체를 무너뜨린 그런 잘못된 사례다 주장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것은 본인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논평할 가치는 없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렇습니다. 당연히 법무부장관께서 해야 할 조치고 오히려 우리들은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상용 검사가 지난 국정조사장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 선서 거부 이유로 자신의 증언이 위증으로 고발당하고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 출범의 발판이 될 거다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들께서 쌍방울과 관련된 사건, 대북송금 사건의 그 수사 과정에서 어떤 불법성과 또 공정성을 상당히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종합적으로 여러 사건들에 있어서 그러한 측면들이 없었는지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국정조사특위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발족시켰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주관적 의견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직자인 검사가 주관적 의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현희 위원 지난해 박상용 검사가 법사위에 와서 청문회에서 자신은 연어·술 파티, 진술 세미나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증인 선서를 하고 진술을 했는데요. 그게 이번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박상용 검사와 함께 수사를 했던 수사관들이나 또 구치소의 직원들이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용 검사가 당시에 국회에 와서 증언했던 것이 위증이라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국회가 위증죄로 고발을 하고 또 탄핵소추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탄핵소추는 국회 결단에 의한 거겠지만 박상용 검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직무집행정지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예상하게 됐을 때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게 수사의 공정성이라든가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한 조치입니다. 당연히 그 후속 조치를 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지난번에 현재에 박상용 검사가 탄핵소추가 돼서 탄핵심판을 받았는데요, 그때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사실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이런 조작 수사라든지 공작 기소에 관해서 수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증거가 없어서 기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국정조사와 그리고 수사에 의해서 증거가 확실히 드러난다면 국회에서도 탄핵소추까지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그 전에 법무부에서 적절한 징계절차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리고 지금 박상용 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변호인과 그리고 수사감사 간의 충격적인 통화 녹취로 드러났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재명 전 지사를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범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진술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검사의 진술 매수라든지 조작기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로 확인된 만큼 법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징계할 의사는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서민석 변호사가 지금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 전부를 제출했기 때문에 조만간 서민석 변호사를 또 다시 소환해서 저희들이 조사할 것이고요. 박상용 검사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진술 유도를 넘어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특정인을 주범으로 지목을 하면서 자백을 요구하고 대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가영장 미청구나 형사상의 이익을 암시한 것은 모해위증교사이자 직권남용에도 해당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철저히 감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한 징계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팩트 체크 하나 하겠습니다.

박상용은 여기서 탄핵 청문회를 했고요, 아직 현재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각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가서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그렇지요, 김용민 위원님?

○**전현희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규택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박규택 위원** 장관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이것 검찰청법상의 징계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은 아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최종적인 징계처분은 아닙니다.

○**박규택 위원** 그러면 검사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사징계법 8조에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박상용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왜 부적절하지요? 검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 조항은 현재 맡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이 안 맞다 했을 때 하는 것이지 지금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그런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제가 분명히 밝혀 둡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기소편의주의라고 흔히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사실 용어가 잘못된 거예요. 기소재량주의라고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없애고 지금 기소법정주의로 가겠다 이런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기소재량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소를 할 때 검사는 재량권이 있다는 것 하나하고 공소취소를 재량껏 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사실 공소취소에 대한 재량권 준 게 더 크지요. 이 두 가지를 구성해서 보통 기소재량주의라고 하는데 저는 검사에 대한 이 공소취소 권한부터 먼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에서 쓰이지도 않고요. 지금 괜히 공소취소라는 필요도 없는 것을 두는 바람에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하려고 지금 얼마나 온 나라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소법정주의로 가기 전에 반드시 공소취소 이 조항부터 폐지해야 된다. 그것 지금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형소법 개정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공소취소도 꼭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곽규택 위원** 그리고 최근에 고 김창민 감독에 대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늦었다고 봅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최초에 보완수사 요구를 했었는데 그 보완수사 요구를 한 다음에 영장청구를 했는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곽규택 위원** 직접 보완수사 해야지요. 지금은 검사가 보완수사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늦게 시작하시면서 장관님 폐북에까지 올리셨던데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될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실망했는데 최근에 검사들 스스로가 우리가 보완수사 요구나 보완수사권 갖지 말자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부에서. 왜 우리가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다 져야 되느냐. 저는 너무 실망스럽고요.

보완수사라고 하는 것은 검사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니까 과거에 열심히 일해 가지고 사건 수사를 정말 잘했던 검사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니까 완전히 범죄자 취급해 가지고 그렇게 가는 이 정치의 행태 때문에 ‘나중에 책임질 일을 우리가 왜 하느냐. 아예 스스로 그냥 보완수사, 보완수사 요구 다 없애자’ 이런 말들이 지금 검사들 사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가면 고 김창민 감독 사건 같은 경우가 계속 생깁니다.

장관님, 앞으로 검사의 보완수사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 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검사들의 의무다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책임진 검사가 경찰에서 올라온 그 사건에 한정해서는 보완수사나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장관님께서 꼭 관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지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검찰 생활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검사들이 높은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9%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유념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리고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가서 활동했다는 것 때문에 정지하신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것은 아닙니다.

○**곽규택 위원** 만약에 그런 거라면 임은정 검사장도 같이 직무정지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해 볼게요.

김창민 감독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길래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체크를 했는데요. 당연히 구속해서 수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구속이 안된 거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그 사유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기본 1차 수사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목격자들에 의하면 다수의 공범들이 있었는데 그게 확인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최초 영장 청구가 왔을 때 저희들이,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했던 거고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영장 청구를 했는데 1차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찰에서 전담팀을 만들어 가지고 면밀하게 철저히 수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제가 봤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지 보고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CCTV가 다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CCTV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는데, CCTV는 다 제출되었을 텐데 이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경찰이 청구했고 검찰이 보완하게 해서 청구했고 그런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겁니다.

기우중 법원행정처 차장님, 직무대행님,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중** 말씀하신 사례에 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만큼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영장이 기각된 부분에 관해서는 영장 담당 판사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법무부장관님도 아시고 저희도 아는데 왜 차장님은 모르시지요? 떠들썩한 내용이고 조금만 더 들어가면 ‘경찰이 수사를 왜 이랬어’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더라고요.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고 그러면 여기에 뭔가 부족한가라고 했더니 CCTV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에 사연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자체가 그 뒤에 질질 끌려가면서 구타당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있다가 생명을 잃은

사연이거든요. 앞뒤 정황도 제가 보긴 봤습니다. 마저 법원이 좀 보십시오.

제가 기우종 차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오셔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여기서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통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저도 법사위 오랫동안 했는데요 아주 부지런하게들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상황 체크하고 받아들이길 건 받아들이고 영장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잘못되었다면 같이 회의하셔야지요. 압력을 가하라는 게 아니라 국민이 뻔히 보는 상황을 해결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보도는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저는 9시 뉴스 정도는 봐야 할 것이고, 저희도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YTN 정도를 보고 연합뉴스 정도도 보고 9시 뉴스도 되도록이면 챙겨 보고 이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다 엄청난 보도입니다. 다시 보시고 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왜 영장이 기각되었고 이 상황이 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사실관계는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법무부장관님도 여기서 더 억울한 일은 없도록 앞뒤 정황을 잘 살펴봐 주시고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하여튼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법무부장관님, 아까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가 위법하다고 말씀하셔서 가지고 제가 장관님께 그걸 조금 더 설명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는데, 검사징계법 8조 3항에 따르면 정직 이상, 그러니까 해임·면직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경우에는 징계 청구 전에도 직무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리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왜냐하면 저런 수사를 했던 조작 수사 의혹이 있는, 지금 녹취가 저렇게 다 나오고 있고 저런 검사는 국민들이 보기에다 매일매일이 너무나 공해 같거든요. 그런 검사가 수사를 하는 업무, 지금 인천지검 부부장검사한테 수사를 하는 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사의 공정성이라든가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갖다가 매우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은정 위원** 맞습니다. 법무부에서 매우 적절하게 판단을 하셔서 가지고 직무정지를 하셨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적법한데 계속 위법하다는 프레임을, 법무부가 잘못했다는 프레임을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주장하고 계시고 가지고 그 부분은 좀 정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2개월 정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아마도 조만간에는 이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연장 규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2개월 내에는 결과를 국민들께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징계 청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지금 나와 있는 저 많은 비위들, 중대 비위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합쳐 가지고 적절하게 중징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도 몇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징계의 공소시효가 대략 한 5월 17일 정도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예.

기우중 차장님, 지금 난민 신청 관련해 가지고 출입국 대기소, 출국 대기실 관련해서 좀 문제를 제기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좀 올려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김해공항에서 난민 신청 불회부 결정을 받은 기니 청년이 5개월 동안 삼시 세끼 맘스터치 햄버거만 제공받았다는 언론 기사가 있었는데요. 난민 신청 불회부 결정을 받으면 지금 저런 데서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회부 결정이 한 75% 정도 되고 있고, 법무부에서. 그러면 취소소송을 하는 데 한 1년 정도 이상 걸리는데, 지금 법원에서 재판하는 게. 1년 동안 아이들 데리고 저기서 저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지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법원에 보니까 대법원 예규로 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난민 불회부 취소소송 같은 경우에도 목숨을 걸고 자기 나라를 탈출한 난민들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예규를 좀 제정해 주실 수는 없는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떠십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중**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빨리 신속하게 난민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장관님,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똑같이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공항난민 불법 구금에 대한 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환송객이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을 받아 주지 않아 가지고 공항 출국 대기실에서 400일 동안 구금됐던 콩고 난민에 관한 결정이거든요. 유엔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을 위반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재발 방지도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엔 권고가 있었다는 것을 장관님께서 좀 챙겨 주시고, 이렇게 기계적인 난민 불회부 결정이 한 75%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불회부 결정 나면 취소소송을 또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아까 보여 드린 대기실에서 굉장히 열악하게 햄버거만 먹으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법무부 차원에서의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일단 난민 심사기간이 너무 길습니다. 길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난민심사원을 별도로 구성을 해 갖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인권침해적일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도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지금 저렇게 불회부 결정을 받은 난민 같은 경우에 자기들의 수하물이 있잖아요. 가지고 온 개인 수하물을 못 받는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옷도 못 갈아입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수하물은 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 좀 한번 챙겨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잘 점검해 갖고요 가능한 난민들의 기본적 인권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교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현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윤상현 위원 존경하는 장관님, 박상용 검사 징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일단 법무부의 입장은 직무상의 의무 위반을 했다 그리고 수사의 공정성을 해하는 언행 등의 비위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핵심적인 거는 과거 박상용 검사가 말했던 사건에 관련돼 갖고 해당 피의자들을 조사도 없이 그냥 수습 차례씩 소환했습니다. 소환하고 나서 당연히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확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확인서도 또 작성하지 않은 사실들이 드러났고요. 또 피의자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반입한 음식을 제공한 사실도 있었고요. 또 피의자들에 대해서 외부인이 자유롭게 접견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도 제공한 이런 사실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어쨌든 피의자들과 관련해 갖고 수사의 공정성을 크게 의심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언론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 저희들이 추가 조사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 외에도.....

○윤상현 위원 장관님, 좀 전에 그래서 그 법적 근거는 검사징계법 8조 3항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8조 3항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해임, 면직 등 조사의 경우에 징계 청구가 예상이 되고 직무집행이 현저히 부적절할 때라고 돼 있습니다. 직무집행이 현저히 부적절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런데 징계 청구가 예상이 되고,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윤상현 위원 징계 청구가 요구되고 그러면 징계 혐의자로 지정이 됐습니까, 박상용 검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징계 혐의자요?

○**윤상현 위원** 예, 징계 혐의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미……

○**윤상현 위원** 그러니까 징계 혐의자로 지정이 되고 이 비위 사실이 통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검사한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 절차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해당 검사에 대해서 어쨌든 직무감찰이, 지금 종합적인 감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본인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징계에 대한 어떤 혐의사실 통보가 오고 또 그거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직무정지한 것은,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미 감찰 과정에서 세 차례 소환받아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사 과정에서 서명 날인도 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명 날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런데 직무정지라는 것은 정말로 직위해제와 같은 효과를 얻지 않습니까. 엄격히 제한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직무정지를 당할 정도의 엄중한 처분을 받는다면 검사의 소명권은 보장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찰 과정에서 세 차례 본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윤상현 위원** 진술을 청취했다는데 본인은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 소명 기회조차, 비위 사실 통보도 없었고 또 소명 기회도 못 받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법 제12조 보면 적법절차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국가의 행정처분, 소위 말해서 이런 징계에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법조계 잡지 저스티스 2021년 나온 184호에 보면 ‘검사징계법의 제(諸)문제’라고 돼 있는데 이런 국가의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담당 직무정지를 당하는 검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당연히 줘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법무부가 가장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야 되는데 이런 절차상 하자가 보인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가장 핵심 검사 아닙니까? 장관님, 검사의 신분은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소취소 모임을 민주당에서 백여 분 이상 되는 의원분들이 만들고 또 대통령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죄를 지우려는 국조특위를 만들고 또 선서 거부한 이후에 갑자기 직무집행정지 이런 절차를 하고 그래서 일련의 모든 게 결국 하나,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의 죄 지우기 이걸로 일관이 된다. 그래서 누구나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것을 왜 이렇게 해 나가냐, 그래서 입법부나 법무부나 똑같이 공존하고 있는 느낌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참 걱정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는 절대 그런 의도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특수한 관계가 있다고 해서 오해를 받을까 봐 더 엄격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상현 위원 오해는 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엄격하게 공정성과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 관련해서도 아시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 계신 분들은 왜 징계를 신속하게 안 하냐고 하는 그런 원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기적으로 왜 국정조사 시작하면서 이렇게 직무집행정지를 했냐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시는데 저는 국가 어쨌든 이견은 있겠지만 국회에서 의결된 절차에 의해 갖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그 과정에서 또 선서를 거부하고 그 외의 여러 가지 다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윤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윤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김동아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대체토론을 하는지 모르고 계셔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동아 위원 나중에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 서영교 대체토론하실 분들은 손 들어 주시면 오늘은 여유롭게 대체토론하게 하고자 하는 거고요.

○나경원 위원 위증 고발은 안 해요?

○위원장 서영교 예?

○나경원 위원 위증 고발.

○위원장 서영교 예?

○나경원 위원 아니요, 됐어요.

○위원장 서영교 체크해 놓겠습니다.

먼저 순서가 있습니다.

검사징계법 제8조 관련해서는 한 번 더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항에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집행정지를 명할 수도 있고 검찰총장의 요구에 따라서 또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걸 위원장이 왜 설명을 합니까? 참 답답해.

○위원장 서영교 예?

○신동욱 위원 그런 걸 법무부장관이 답변하시면 되지, 왜 위원장이……

○박은정 위원 진행하시잖아요, 진행.

○위원장 서영교 국민들께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한번씩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위원장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리를 왜 합니까?

○위원장 서영교 검사징계법 제8조에 대해서, 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분 송달과 직무정지 이 부분 한 번 더 검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순서는 최혁진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최혁진 위원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위원장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무소속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이 좀 부족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추가적인 질의를 통해서 내용을 분명하게 해 주시는 게 사실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처럼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위원장님의 정상적인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자꾸 이의 제기를 하시는데, 심지어 전임 위원장님들까지 끌어들이면서…… 그런데 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말씀들을 자꾸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호응이 없다라고 하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임 위원장들이 지금 법사위원장을 거쳐서 잘되고 계신 게 질투와 시샘이 나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법사위원장이 내란 척결을 위해서 강하고 원칙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박수를 보내고 그래서 국민적 선택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발언들을 자꾸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데, 제가 어제 국정조사특위 별도로 하시는 것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발언들을 하셨나 찾아봤더니 여기 나경원 위원께서는 ‘이 국정조사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곽규택 위원** 대체토론하세요, 대체토론.

○**최혁진 위원** 그런데 국민들은 전혀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국민의힘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지율이 13%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곽규택 위원** 다른 위원들 과거 발언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대체 토론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최혁진 위원** 그리고 윤상현 위원께서도 ‘대한민국이 민주당 공화국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무슨 민주당 공화국…… 국민들은 진짜 민주공화국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겁니다. 그런 지점들을 좀 분명히 아시고 지금 신임 위원장님도 오셨으니까 앞으로 법사위 때 진행을 계속 방해하시거나 이런 것 하지 마시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저는 오늘 계속 얘기가 나오는 박상용 검사 이 문제가 박상용 검사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차 특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 확인,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인다’라고 브리핑한 것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들었습니다.

○**최혁진 위원** 그리고 이어서 이시원 공직비서관에 대한 얘기들이 언론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검사 아니었습니까? 특히 유우성 사건을 맡았던 담당 검사였어요.

유우성 사건이라는 게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가 탈북자 신원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했던 사건이고,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과 국정원이 공조해 가지고 협박, 가혹행위, 인권침해, 증거조작, 은폐까지 했다는 게 다 드러났고 심지어 친동생을 불러 협박을 해서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게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던 사건이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최혁진 위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당시에 법무부나 검찰에서 이시원 검사를 경정계 처리하고 그렇게 적극적인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윤석열 정부에 서는…… 물론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짓을 시키려고 발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시원이라는 사람을.

어쨌든 공직기강비서관이 돼서 또 다른 국정농단에 연루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 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박상용 검사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이번 에는 전례가 없도록, 이시원 검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라 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준비를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그리고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쌍방울 이 사건 같은 경우를 조작한 거잖아요. 현재 나오는 것 보면 북한 통일전선부 조선아시 아태평양위원회는 유엔 대북제재 대상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뭘데 공직기강비서 관이 국정원에까지 얘기를 해 가지고 여기를 제재 대상이다라고 하는 정부 규정을 바꾸 도록 강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뭘 만들려고 한 겁니까? 이 사건을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고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조작을 해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까 지 국가보안법 사건에 연루시키려고 이걸 기획·조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박상용의 윗선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것은 나왔지만 윤석열·김건희 꼬리 자르기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 정도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게, 저도 대통령비서관을 해 봐서 알지만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없이는, 대통령실 내부의 공조가 없이는 그리고 민정 라인이나 이런 정부 라인과의 공조 체제가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 가 없어요. 일개 비서관이 이런 일을 자기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윤석열·김건희 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서 박상용으로만 이어지 는 것이 아니라 사실 친윤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인지하거 나 이 조작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박상용 하나 꼬리 자르는 결로 끝나서는 안 된다. 법무부에서도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시고 이 사건에 연루된 자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인 수사를 통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에 개입돼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밝혀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조사특위에 대해서도 계속 이 특위 사건을 공소취하니 이런 결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방향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도 저는 이 사건이 결코 단순한 사 건이 아니라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 다.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조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저희들이 직접수사권은 없지만 지금 제2차 특검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요. 또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이 특위 위원장을 맡으셔서 갖고 국정조사가 진 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어쨌든 국정조사에서도 국정원장이 상당 한 정도의 과거 드러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보고했습니다. 그런 것도 종합해 갖고 제2 차 특검이 수사를 할 것이고 저희 법무부가 따로 인권점검 TF에서도 감찰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빠진 부분들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최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침, 서영교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고마워요.

○신동욱 위원 혹시 마음이 아프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저는 대법원장도 있습니다만 법무부장관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한 검사가 인간 사냥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의 오랜 전통이 무슨 사건이 생기면 사람을 공격하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한덕수 총리 만났다는 것들 그리고 지귀연 판사가 후배들하고 술 먹었는데 어쨌다는 것 또 지난번 탄핵할 때 박상용 검사가 울산지검에서 청사예다가 무슨 대변을 봤다는 얘기 이런 걸 가지고, 인격 모욕을 가지고 사람을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혹시 앞서 제가 언급한 것 중에, 다 고소·고발이 되어 있을 텐데 한덕수·조희대 회동설 그리고 지귀연 판사 문제 이런 것들 혹시 수사가 진척된 것이 있습니까? 사실로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최종 처분에 관련돼서 아는 바는 없습니다.

○신동욱 위원 지금까지 아무런, 의혹 제기 이후에 수사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2018년도에 이화영 씨가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되면서 본격적인 대북사업을 시작했고 거기에 쌍방울이 관련됐고 2019년도 하반기에 800만 불이 북한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2020년 1월 달에 이화영 지사가 통일부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신청을 합니다.

이런 큰 열개 속에서 이것을 과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겠느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소소한 것들, 박상용 검사가 무슨 징계를…… 이것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너무나도 분명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영상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장관님, 잘 보십시오.

영상 좀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한 번 더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장관님, 요구 수준이 너무 높다는 얘기는요 북한이 500만 불을 요구했답니다, 방북 대가로. 그런데 이쪽에서 100만 불밖에 못 주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300만 불이 됐다는 건데요.

저게 2020년 5월에 방송된 영상입니다. 2020년 1월 달에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통일부에 이재명 지사 방북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종석 국정원장도 재판에서 얘기했다시피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자백을 했습니다, 저것. 그런데 저런 정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걸 가지고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북송금 사업을 몰랐을 리 없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검사를 대통령을 비롯한 전 여권, 이 거대 여당이 인간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죽이겠다고.

오늘 올라온 법안을 보면 사자 명예훼손까지 만들자는 대한민국입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도 법적으로 처벌하자는 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1분만 더 주세요. 다들 했으니까 1분만 더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1분 더 드릴게요.

○신동욱 위원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그런데 박상용 검사가 뭘 잘못했는지 조사해서 나오면…… 법무부, 대검이 다 감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발표를 못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검찰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검사를 밀도 끝도 없이 국정농단 했다, 조작기소 했다고 하면서 전 여권이 이 사람을 온 산에 토끼 한 마리 풀어 놓고 인간 사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이신 법무부장관님이 여당에서 간 장관이라고 해서 가지고 방치하고 계신 거예요.

박상용 검사가 지금 직무정지 된 게 뭐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차피 일도 못 하는데, 두 달 뒤면 검찰 사라지는데. 그게 법적으로 유효하면 어떻게 안 유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온 산에서 발가벗겨져 가지고 사냥을 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불쌍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조금 전에……

○신동욱 위원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동욱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간 사냥을 합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들이 이 문제가 아니라 박상용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불공정한 문제점들 그런 면에서 위법한 상황들 때문에 저희들이 징계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신동욱 위원 저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조작기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 문제는 저게 어떤 경위로 촬영이 되고 어떠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신동욱 위원 본인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촬영이 아니고요. 무슨 몰카입니까, 저게?

○법무부장관 정성호 다만 경기도는 손학규·김문수·남경필 지사 이래 쪽 민간교류를 가장 많이 해 온 지방자치단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는 당시 정부와의 관계가 썩 원만치 않았기 때문에 가장 합법적이고 절차적으로 명백한 그

런 과정을 통해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래서 잘 안 되니까 쌍방울을 통해서 간 거라는 게 상식적으로 알려진 사건 아닙니까, 지금.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것은 위원님의 추측 같습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그때 기사를 돌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기사로 나온 것들 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마무리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그것 따져 보시자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수사했던, 대단한 권력자도 아닌 일개 검사를 이런 식으로 인간 사냥을 해 가지고 사람 인격을 모독합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법무부에서 빨리 검찰 끝내서 가지고 고소하든지 고발하든지 하시라니까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적절한 조치를 좀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신동욱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강패. 박상용 검사는 강패 행동대원이지, 두목은 윤석열이고.

○**신동욱 위원** 선배님도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만하세요, 이제. 두둔할 게 따로 있지요.

○**위원장 서영교** 제가 법사위가 지금 생중계되고 있어서 잠깐 알려 드릴게요. 국회방송에서 칠천오백여 분이 동시 접속하고 계시고요 MBC는 칠천여 분, 팩트TV, 오마이뉴스, JTBC 등 해서 약 이만여 분이 동시 접속을 통해서 법사위를 생중계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위원회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이 밝혀졌고 그런 속에서 수사의 잘못된 부분들도 다 드러나고 있으니 여러분, 국정조사특위와 법사위를 잘 봐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인간 사냥 운운하는데요 인간 사냥은 윤석열 정권 검찰이 했지요. 인간 사냥을 한 검사에 대해서 사실을 밝히고 징계를 하려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 사냥이라는 말을 거기다 갖다 붙일 수 있는지 저는 심히 유감이고요.

무슨 증거자료라고 해서 유튜브 영상을 틀었는데 저런 식으로 검찰이 수사했지요. 저게 300만 불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을 갖다 붙이지 않아요. 300만 불이다, 저게 자백한 거다 얘기하는데 저런 식으로 짜깁기된 사건이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이지요. 검찰이 했던 일을 계속 동료 위원님이 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국정조사특위 위원은 아니나다마는 야당 위원들께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저도 한마디해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취임하자마자 중앙검사장 등 인사를 한 다음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진짜 인간 사냥, 진짜 토끼몰이식 수사를 했던 것은 여기 계신 국민의힘 위원들도 사실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것일 겁니다.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뿐이에요.

왜 그렇냐 하면 제가 그때 변호사였는데 중앙지검에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중앙지검 모 부장을 만났는데 중앙지검 모 부장이 저한테 그러니까. 검찰에 있는, 아주 핵심에 있는 부장이 그래요. ‘재들 진짜 왜 저러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저한테 현직 검사가 한 얘기에요. 그때 당시에 현직 검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것 너무한 것 아니냐. 한 사람을 타깃으로 잡아 가지고 전 검찰 권력이 달려들어서 저렇게 하면 나중에 저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이런 말들을 했던 거예요. 그것은 전 국민이 아는 얘기에요.

그런데 박상용 검사 녹취가 나왔지요. 전 국민이 분노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중범이니 주범이니 그것은 검사가 해서도 안 될 얘기고, 그런데 박상용 검사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더군요. 좋습니다. 그런데 변호사하고 통화하고 그러면 그것 다 수사보고서 남겨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이 있는지 장관님 확인해 보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기표 위원 피의자하고 면담해도 수사보고서 남겨야 되고 변호인하고 통화하고 그러면 다 남겨야 돼요. 그런 절차를 다 지켰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자기가 제도에 없는 플리바게닝 이런 것 도입, 자기가 스스로 막 만들어 가지고 하는 짓을 하면 징계받아야지요. 그게 어떻게 인간 사냥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기표 위원 조작 수사·기소가 가능한 배경을 제가 좀 보지요.

일단 수사대상을 타깃팅해야 됩니다. ‘재는 어떻게든 내가 집어넣겠다’ 이게 타깃팅이 돼야 되고, 둘째는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도 그 사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됐을 때 조작 수사·기소가 가능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객관적인 사실을 틀게 되면 진술밖에 없습니다. 아까 야당 위원께서 하는 그런 증거를 갖다 놓고 ‘이게 대북송금 대가지?’라고 진술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요,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그 다리를 놓는 것은 진술입니다.

김성태가 처음에 입국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재명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구속된 다음부터 진술이 바뀝니다. 그러면 실제로 국가정보원에서 말한 바에 의하면 리호남이 필리핀에 오지도 않았는데 마치 필리핀에서 전달한 것처럼 공소사실이 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장관님,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대북송금이라고 해서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려면 김성태를 이른바 구워삶아야 됩니다. ‘당신 평생 썩을 수 있다. 회사 지금까지 있는 것 다 날려 버리겠다’. 김성태의 진술만 가져오면 그게 돈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불문하고 돈이 간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대북송금으로 둔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연어·술 파티라 하는 것을 우리가 왜 강조하는지를 한번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연어를 들여오고 그다음에 공범들을, 김성태하고 이화영을 둘이 골방에 있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첫째, 여기서 이재명을 이른바 위으려고 하면 두 단계가 필요해요. 이화영이 사실이 아닌데도 그것을 인정하게 해야 됩니다. ‘대북송금을 한 게 맞습니다’라고 자백하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자백을 근거로 ‘내가 이재명에게 보고했습

니다’, 이 두 가지를 끌어내야 돼요, 검사는. 그렇기 때문에 연어도 사 주고 술도 사 주고, ‘둘이 잘 얘기해 봐라. 이화영, 너도 잘 생각해 봐. 어차피 김성태가 저렇게—이른바 그런 표현을 씁니다—꼭 물고 있는 한 네가 암만 부정해도 너는 극형을……’.

1분만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1분만 더 주세요.

○김기표 위원 ‘네가 암만 부인해도 김성태가 이른바 꼭 물고 있는 한 너는 징역 10년, 20년 살 수밖에 없어. 이재명은 이미 죽었어. 윤석열 지금 취임했잖아. 이재명은 곧 아ؤ 될 거야. 그러니까 네 살 길을 찾아. 그래서 일단 자백해. 네가 방북비용으로 받았다는 것 자백해’,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는 것 자백해’, 이 두 가지가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골방에 가둬 놓는 겁니다. 연어를 사 줬다고 말이 바뀌는 게 아니고 공박한 처지를 이용해서, 피의자의 구속돼 있는 공박한 처지를 이용해서 ‘둘이 진술 맞춰. 그럴듯하게 맞춰 오란 말이야’, 이게 이른바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박상용 검사가 그때 녹취록이 어쨌든 저쨌든은 오히려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정조사특위에서 그런 부분을 잘 밝혀내야 되고 장관님께서도 감찰을 할 때 실제로 처음에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이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사건부터 시작해서 안 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타깃으로 해서 계속 이재명 대표까지 온 사건이잖아요, 처음부터 타깃으로 해서.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감찰할 때도 그런 점을 잘 살펴야 이 사건의 본질이 드러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장관님, 지금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직무정지 한 게 검사징계법 8조 2항이나 3항이나,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2항은 이미 징계가 청구된 사람에 대한, 징계 혐의자에 대한 직무정지인 것이고……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3항은 징계 청구가 되기 전이라도……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맞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용민 위원 징계 청구 전이라도 직무집행정지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라, 이런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알고 있는 검찰총장이 그 상황

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3항에 따라서 직무집행정지를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징계 청구와 관련된 절차를 거쳤냐 안 거쳤냐, 지금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올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리고 지금 박상용 검사에 대한 사냥이니 인격 모독이니 얘기하고 계신데 이게 국민의힘은 정쟁화시켜서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다 나서서 고작 박상용 검사 한 명의 대변인 노릇 하고 있고 그 사람 하나 지켜 보겠다고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으니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검사 있으면 똑같이 목소리 내고 ‘어떻게 사건을 저렇게 조작하느냐. 녹취록이 뻔히 나왔으면 인정할 것 인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지요. 그게 국민의 상식에도 부합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본인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붙잡고 있듯이 박상용 붙잡고 있는 것 도움 하나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상용 도대체 왜 저러고 다닐까, 직무정지 됐고 녹취록 등장해서 정말 온 세상에 소위 말해서 까발려졌는데, 나쁜 짓 한 게 다 들통이 났는데 왜 저렇게 뻔뻔하게 인터뷰하고 다닐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 지금 정치권에 입문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게다가 국민의힘이 저렇게 열심히 도와주는 것 보니까 곧 출마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징계를 받고 나가게 되는 이런 검사들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표출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사 퇴직 후 혹은 징계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출마 금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그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려고 하려면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예를 들어서 탄핵의 효과가 파면인데 탄핵으로 파면된 공직자는 5년 동안 공무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한다, 이렇게 정리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징계만 해 가지고서 끝난다고 하면 그로 인해 가지고 과연 그게 적절한 처분이 될는지 의문을 갖는 국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리고 박상용 검사가 녹취록에서 얘기하는 것 보면 누구를 중범으로,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당신을 중범으로 만들어 주겠다. 중범으로 기소하겠다. 그리고 보석도 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만약에 경찰이 했 다라고 하면 겁을 먹었을까요? 그 말에 혹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왜? 기소권도 없고 나중에 보석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권한도 없고 경찰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경찰이 백날 그 얘기 해 봤자 안 믿습니다.

그런데 박상용이 얘기하면 겁먹어요. 그리고 혹해요. 왜?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영장집행권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형권까지. 구형 얼마 할지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검사가 얘기하면 겁먹고 속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검찰개혁이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과거에 수사·기소에 관련된 전권을 갖고서 그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개혁의 문제가 대두됐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가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민 위원**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님, 윤석열 판결문이 공개됐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판결문 공개됐습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굉장히 방대한 양이라고는 들었습니다.

○**김용민 위원**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개를 안 하다가 하도 문제가 되니까 얼마 전에 홈페이지에 올렸지요?

그런데 다 비실명 조치해서 올렸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아마 그렇게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지금 다 모르고 있다가 제가 얘기하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비실명화 조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지금 온 국민이 윤석열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영상으로 다 봤는데 왜 판결문을 비실명화해서 공개합니까? 그러니까 마치 암호문처럼 돼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참여연대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공개하라라는 행정소송 제기한 것 알고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면 안 되고요.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일단 공개하기 전에 우리 법사위에 비실명 조치하지 않은 판결문 제출부터 하십시오. 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실명화 자체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많은 문제라든가……

○**김용민 위원** 그리고 헌법과 법원조직법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돼 있기도 하고……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맞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다음에 정보공개법에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비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저질렀을 때 했던 모든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저지른 행동

들이었어요. 그러니 비실명화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예요. 비실명화하지 말고 공개하시고 그다음에 법사위에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실명으로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할 수 없이 하는데……

○**위원장 서영교**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공익에 해당할 때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확인해서 살펴보고……

○**위원장 서영교** 제가 행정안전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의결 한번 해 주시면 좋을……

○**박은정 위원** 의결해도 됩니다.

○**장경태 위원** 그냥 오후에 위원회 의결 하면 돼요.

○**위원장 서영교** 차장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조금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많이 움직이셔서 우리가 모르는 것도 좀 주시고 상황도 체크해 주시고 리드도 좀 해 주시고 이래야 신뢰도 하고 따라가지 ‘잘 모릅니다’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비실명화 문제만큼은 저희 법원도 늘 곤혹스럽습니다. 가독성도 떨어지고 비실명화된 판결문이 정보제공 가치도 없고 그래서 늘 원망이 많은 부분인데요. 이것도 입법적으로 해결되기를……

○**위원장 서영교** 그게 윤석열 내란사건과 관련한 거니까 그렇지요. 생중계됐잖아요. 모든 세상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말씀 취지 알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의결할까요? 의결해서 할까요?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아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김동아 위원** 장관님, 국정조사에 법사위까지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영교 위원장님, 훌륭한 진행 감사드립니다.

장관님, 지금 박상용 검사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서 감찰 진행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국정조사 과정에서 보니까 인권침해 TF 지금 담당 부장 1명에 담당 검사 1명, 0.5명이라고 하지요. 일부 본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정도 인원으로 이거 제대로 감찰이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굉장히 어려운 사정입니다.

○**김동아 위원** 인원 보장이 사실상 어렵습니까? 왜 인원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조사 인원이 있었는데 또 검찰 내부의 인사이동 때문에 지금 서울고검 차장이 원래 고검의 담당 부장이었는데 검사장 진급해서 나가고 거기에서 인원

보강……

○**김동아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국정조사에 계셨겠지만 지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도 모해 목적 위증이나 불법감금이나 직권남용죄 등 여러 범죄 혐의, 징계 혐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찰을 진행하려면 인원을 좀 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맞습니다.

○**김동아 위원** 꼭 좀 보강해서 제대로 된 감찰 진행해 주시고, 박상용 검사 지금 받는 혐의들을 보면 단순히 징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님 의견 어떠신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엄중하게 그에 대해서 감찰하고 있고요.

○**김동아 위원** 지금 드러난 사실 이외에도 여러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문서 위조나,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 보고받으셨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아직 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보고는 받지 않았습다.

○**김동아 위원** 그런데 지금 감찰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공수처인데 우리가 공수처 잘 알고 있듯이 제대로 된 수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박상용 검사나 정치감찰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도 결국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는 특검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검 감찰부장 있잖아요, 김성동 부장 맞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지금 그 부장이 들어와서 감찰 진행한 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1년이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법무부장관 정성호** 특별히…… 통상적인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감찰을 진행하는 것 말고 어떤 통상적인 업무가 있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검이니까 고검, 지방검찰청에 대해서 업무 감찰들 또 일반 직원들에 대한 직무감찰 등 이런 일반적인 업무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김동아 위원** 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동아 위원** 보고받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감찰 결과 대검…… 하여튼 전반적인 보고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김동아 위원** 아니, 지금 박상용 검사나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서 조사하게 된 원인이 김성동 부장이 제대로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고 업무를 해태하기 때문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다기보다도 어쨌든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검에 직접 지시해 가지고 고검에 그렇게 구성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김동아 위원** 지금 김성동 감찰부장,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탄핵소추 되었다가 직무정지가 풀리고 나니까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추천하고 대행의 대행인 이주호 장관이 당시 임명한 분이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이렇게 제대로 된 정당성도 없는 이런 감찰부장 계속 대검에 놔두고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임기와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김동아 위원**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검찰청법 보니까 임무를 해태하거나 징계 사유가 있을 때는 다른 보직으로 전보 보낼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 검토해서 지금 직무배제시킬 그런 의향 없으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건 명백한……

○**김동아 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어디서는 감찰부장을 패싱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감찰부장이 감찰을 제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찰을 지금 막고 있다는 얘기가 여러 군데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장관님 오히려 더 잘 아실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못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청법 꼼꼼하게 살펴보고 감찰 직무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업무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 왔습니다, 사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대체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는……

○**나경원 위원** 아까 1분 덜 준 것……

○**위원장 서영교** 안 됩니다, 나경원 위원님. 따로 만나서 질의하시고 오늘은 저에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질의 잠깐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녹취를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녹음자료 재생)

박상용의 육성입니다.

제가 내내 들고자 합니다. 박상용 육성의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이 전화는 박상용 검사가 변호사에게 한 겁니다. 박상용 검사가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면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고 이화영을 종범으로 하고 그래야지……

○**곽규택 위원** 아니, 서민석 변호사가 앞에 뭐라 그랬는지 들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위원장 서영교** 앞에 또 틀어 드릴게요, 그러면. 그래서 국정조사특위에서 다 나왔어

요. 앞의 내용 마저 다 틀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이렇게 되면 보석으로든 다른 영장 가는 것 내가 막아도 줄 수 있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박상용의 육성입니다. 저게 박상용이 아니라 다른 사람입
니까? 박상용의 소리입니다. 내용이 없으니까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위에서 깨져서 답
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이화영의 보고했다라고 하는 진술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무부장관님, 검사가 이렇게 변호사한테 답답해 죽겠어서 전화를 하는 게 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해서는 안 되는 행위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징계감이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주 중징계감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중징계감입니다. 이 녹취가 나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서민석 변호사
가 다른 딜을 하려고 해서 자기가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했다는 사람이
답답해서 죽겠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다음, 이 내용이 국정원장의 보고로 다 나왔는데요, 한번 띄워 봐 주세요.

국정원장이 갖고 있는 자료를 검토했는데 저기 보면 파란색으로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한 이창현 특별수사관이 주도했던 감찰결과서는 수원지검에 공식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창현 특별수사관은 누구입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보낸 특별수사관입니까?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마자—22년 5월에 됩
니다—22년 7월에 이창현 특별수사관을 국정원으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다 감찰했습니다.

다 수사했더니 여기에는 쌍방울과 경기도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감찰결과
서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창현 특별수사관
이 감찰을 했습니다. 누구 지시에 의해? 윤석열 지시에 의해. 그리고 ‘경기도하고 쌍방울
이 관계가 없네’ 나왔는데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 것 띄워 봐 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서 그 감찰 결과 2019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
리호남이 실명 여권을 사용해서 제3국에 체류 중이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리호
남이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나왔지만 제3국에 있었다는 자료가 국정원에
있었던 겁니다. 이 자료를 검찰이 가지고 가지 않은 겁니다. 검찰에 국정원이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다음.

이 자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재판에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을 주범으로 하고 이화영을 종범으로 하는 그 인간 사냥, 대권주자 사냥이 박상용에 의
해서 진행되었는데 박상용은 보니까 검사장 밑에, 저 밑에 있더라고요. 박상용이 이야기
하지요? 내가 혼자 한 게 아니더라고.

다음.

누가 끼어들었습니까? 윤석열의 황태자 이시원이 얘기해요. 통전부와 아태위가 금융제

재 대상이 아니더라도 하는 당시의 보도가 나오자 국정원에다 지시합니다. ‘아니, 왜 이게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에요?’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시원이 끼어들게 되는 거지요. 이시원은 윤석열의 황태자입니다. 화들짝 놀라서 아태위가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당시 기재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끼어들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마어마한 자료가 온 세상에 공개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박상용을 왜 우리가 잡겠습니까? 그동안 국감장에 나와서, 청문회장에 나와서 허위 진술한 내용이 다 나왔잖아요. 그것은 이제 이 법사위를 잠시 정회하고 속개할 때 다시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요.

우선 대체토론을 다 끝내셨습니다.

대체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박지원 위원 하나만 질문할게요.

○나경원 위원 저도 질문하게 해 주세요. 박지원 위원 주실 거면 저도 주세요.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박지원 위원님 오후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진행해 나가고요. 그렇게 할까요?

○박지원 위원 위원장이 시키면 그렇게……

○위원장 서영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6항까지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오후 2시 반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위원장 서영교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125조 제6항에서는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3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만료일인 2026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인 고발의 건

○위원장 서영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에 따라 2025년 9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및 2025년 10월 14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용 증인의 위증에 대하여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선 국민의힘 네 분 손 드셨는데 세 분으로 말씀 맞춰 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민주당 질의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세 분 그리고 최혁진 위원님 이렇게 네 분으로, 전현희 위원님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석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증인 고발의 건을 보면, 우리 옛말에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오인살인이다, 오인조작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인’은 국가 권력기관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께서 3월 4일에 SNS를 올립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작수사, 살인보다 더 나쁜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민주당의 국회, 우리 당은 모두 ‘부’ 표 단졌습니다. 민주당의 국회가 조작기소 특위를 발족합니다. 이건 엄연히 직권남용입니다. 국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지요. 왜? 그 조작기소 특위의 목적은 공소취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니까 세 번째로 2차 특검이 뭘 합니까? 쌍방울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진술회유 의혹 사건은 본인들이 수사권이 있다고 어떤 근거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엇그저께 조작 특위에서는 이제 국정원까지 동원이 되었습니다. 국정원이 한마디로 허위 진술을, 이종석 국정원장이 허위 진술을 해요.

이종석 국정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 남북교류위 부위원장 그리고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장을 이화영과 공동 자문위원장 한 사람입니다. 국정원까지 이번에는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법무부가 직무정지를 합니다.

왜 이렇게 급할까? 결국 검찰을 팔 비틀어서 공소취소 하기는 어려우니 2차 특검에서 공소취소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2차 특검 활동 시한이 언제입니까? 5월 30일입니다. 이거 두 번 연장해도 7월 30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 2차 특검 끝나기 전까지 박상용 검사를 고발해서 처벌 받게 하고 그런 걸 증거로 해서 공소취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건 서민석 녹취록하고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 이 두 가지 갖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민석 녹취록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이 사건은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 지사를 접견하고 나서 보니까 ‘이 사건은 뇌물 부분은 정치자금법으로 의율하면 되겠고 그리고 그 조건으로서 외환관리법은 중범이 맞으니 이것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면서 변호사일 때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 사건은 이렇게 푸는 게 맞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판사 출신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주고 선임했다고 하는 그런 녹취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이 녹취록 한번 꼭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뇌물죄 부분은 정치자금법으로 의율하면 되고 외환관리법 부분은 중범이다. 결국 서민석 변호사가 이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사건의 진실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검사가 독심술이 있습니까? 이걸 예상하고 이렇게 읽습니까? 서민석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민주당의 청주 시장후보로 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보기에 이 사건의 주범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본 겁니다.

연어·술 파티 부분은 이미 2심 재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판결문 한번 읽어 보십시오. ‘연어·술 파티’, ‘연어·술 파티’ 했는데 연어회라도 많이 나온 줄 알았어요. 연어회덮밥, 연어 도시락입니다. 4만 9100원 결제되었습니다. 한 그릇에 1만 얼마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수원고등법원 판결문 보면 영상녹화실에 큰 창이 있어서 내부를 훤히 볼 수 있는 구조다, 과연 이렇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 같은 회유가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그다음 한번 보시지요.

피고인의 정치인으로서의 경력,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쉽지 않고 이 사건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하는 2023년 5월 29일 이전에 이미 수사기관, 원심 법정에서 이화영 지사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범이라는 진술을 했다는 그런 수원고등법원 판결문으로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오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발하겠다는 것이 그런 걸 사유로 삼고 있어요.

저는 이 위증 고발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고발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고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이 직권남용으로 저지르고 있는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 결국 공소취소를 위한 위증 고발은 한마디로 허위의 사실에 기초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거짓말하는 검사 고발하겠다는 게 그렇게 야당이 발 벗고 나서서 반대할 만큼 두렵습니까? 진실이 밝혀지는 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검사 하나 처벌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사건 조작했고 그리고 궁박에 몰려 있는 피의자 회유하고 협박하고 해서 허위 진술을

얻어 냈으면 처벌해야지요. 그러라고 우리가 수사권·기소권 줬습니까, 검사들한테? 그것 하지 말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예전에 있었던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서 한 발도 나아간 게 없고 배운 게 없어요.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해외 공문서, 중국 공문서 위조해서 그것 법정에 버젓이 들어 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가 망신 다 시켰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다 망가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검찰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때 등장했던 이시원이 지금 또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검사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소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회는 고발권만 있으니 고발하고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인정되면 기소해라 이렇게 법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차 특검에서 공소취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2차 특검이 어떻게 공소취소를 합니까? 공소취소 권한은 현재 검사들,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소유지 하고 있는 검사들이 권한이 있지 특검은 공소취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2차 특검에서 공소취소 한다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9월 22일 날 입법청문회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박상용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서 두 차례 증언을 시켰습니다. 그때 분명히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 당시에 법무부 검찰 결과가 나왔었는데 ‘박상용 검사가 한 얘기들이 법무부 검찰과 대검 검찰조사 결과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저희가 분명하게 경고하고 진술을 받았습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지요. 연어회덮밥을 먹었고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회유·협박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없었다라고 했고 마치 막으로는 당시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주범으로 엮으려고 한 사실이 있냐라고 해서 없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을 한 세 가지가 가장 큰 위증 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25일 자 녹취가 처음에 등장했어요. 왜 5월 25일 자 녹취가 등장하느냐? 박상용이 그날 서민석 변호사에게 굳이 전화해서 자기가 답답해서 전화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날짜가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 그 직전인 2023년 5월 19일 날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가 이때 기존 입장을 일부 변경해서 검찰의 수사 방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합니다. 5월 19일입니다. 그러다가 5월 24일 전화하기 전날 조사에서는 다시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진술을 유보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났지요, 박상용이. 자기가 답답해요. 애가 답니다. 이것 지금 조작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화영 부지사가 태도를 바꿔요. 그러니까 그다음 날 전화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년 이상 구형 가능할 수 있다,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러면서 형량 거래하고 마치 보석도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 25일 자 전화는 이 흐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상용 검사가 그 뒤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렇게 거짓말하고 조작하고 해 놓고 나서 이화영 부지사가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증언을 하니깐 그 증언, 자기가 조작했던 것을 폭로한 그 증언에 대해서 위증으로 기소를 또 해 버렸어요. 이렇게 기소권·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는 검사가 대한민국 검사입니까? 깡패지. 당연히 처벌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님 하시고 전현희 위원님 그리고 김동아 위원님, 영상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송석준 위원님 하시고서 보시지요.

○송석준 위원 이번 안건, 박상용 검사 이분에 대한 위증죄를 지금 상정했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언제 있던 일인가요? 지난 25년 9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25년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이화영에 대한 회유·진술 세미나, 연어·술 파티, 이재명 연루 유도 사실 등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기 때문에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위증했다면 국감 직후에 또는 입법청문회 직후에, 그분이 증언을 했으니깐 문제 있으면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위증죄로 고발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안 했어요? 위증 혐의가 없으니깐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참 지나서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뜬금포가 터져요. 뜬금포로 이분을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왜 그래요? 이게 무슨 배구의 시간차공격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국회가 무슨 장난 노는 그런 공간입니까? 도대체 없는 죄를 이렇게 만들어 내도 되겠어요?

만약에 이번 국정조사특위에서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하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또 빌미 잡아서 국정조사특위 끝나고 나서 위증죄, 법왜곡죄, 기타 뭐뭐뭐 해 가지고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또 고발할 것 아닙니까? 이분이 증인 선서를 안 하니깐 그냥 과거에 없던 것까지 탈탈 털어서 없는 걸 사실로 이렇게 둔갑시켜서 위증죄로 고발한다?

제발 이런 짓 하지 마셔야지요. 신성한 국회 법사위가 이렇게 없는 죄를 탈탈 털어서, 그것도 한참 지난 다음에 경기 끝났는데 시간차공격을 한다고 이렇게 위증죄로 고발하면 국민들이 웃잖아요. 지나가던 소도 개도 웃지 않겠어요. 이렇게 우리 국회가 할 일 없으면…… 지난번에 문제없다고 해서 다 통과된 걸 지금 와서 갑자기 이분을 위증죄로, 뭐 이렇게 고발할 명분이 없어지니까 서랍 속에 들어간 지난 과거 서류를 뒤져 가지고 지금서 위증죄 고발하겠다고? 제발 우리 법사위가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정말! 간사님, 법사위원장님, 제발 이런 짓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따져 봅시다. 여기 내부에 보면 무슨 이재명 주범, 이화영 중범이라고 피고발인이 진술을 유도했다. 아니, 세상에 현실이니깐 그렇게 유도를 해 보고 아니면 말고예요. 원래 수사할 때는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제가 수사기법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근거 없이 그렇게 사실을 유도하고 허위로 조작을 해서 만약에 그렇게 기소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거지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밝히셔야지. 여기에 보면 아무런 근거도 제시 못 하고 그 말을 했더라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공격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도 이 자리에서 그분 발언을 못 하게 하고 또 짜깁기를 하길래 어제 박상용 검사를 대상으로 우리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이, 특위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따져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도대체……

국민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어제 이미 상세하게 이분이 발언했는데 술, 근거도 없었던 걸 여러분들이 여기다 끼워 넣었어요. 거기다 연어회 그게 우리는 엄청나게 비싼 줄 알았어요. 한 10만 원짜리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무슨 갈비탕 가격보다도 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화영이라는 분이 그렇게 가벼운 분입니까? 그분이 그렇게 그거 하나 먹고 위증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바꿨어요? 도대체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화영 그분은 당장 극형에 처해야 돼요. 자기의 주군, 지금 대통령 되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연어회 한 그릇 얻어먹고 이렇게 배신의 칼을 들이대는 이화영 이분을 여러분들 정말…… 지금 대통령까지 된 분을 포함하고 배신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 엄벌에 처하도록 지금 와서 그분이 위증하고 이런 걸 고발하세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조사하고 수사한 검사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집단 린치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아니지요. 적어도 대한민국의 신성한 의정당에서 대한민국의 거약과 맞서 싸운 박상용 검사를 이렇게 무고한 혐의로, 위증죄로 고발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신동욱 위원님이 영상에서 보여 줬지만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본인 스스로 얘기했어요, 어디 방송에 나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분명히 북한에서 거하게 요구한다, 그래서 이걸 누가 도움받아서 할 거다. 실제 그대로 댔다는 것 아닙니까? 100억 정도가 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진상 규명은 그 부분을 해야지요.

○위원장 서영교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대북송금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우리가 이런 데 중요한 시간을 써야지, 무고죄로 특정 검사를 몰아세우는 데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쓰는 건 지극히 잘못됐으니까요.

○위원장 서영교 송석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송석준 위원 우리 법사위에서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맙시다. 그리고 시간차공격으로 이렇게 없던 죄 뒤집어씌우는 위증죄 고발 이것 취소하시고 당장 여기서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연어가 들어간 건 인정을 하시는 거고?

○송석준 위원 연어는 맞아요. 연어회는 먹었대요, 연어덮밥.

○위원장 서영교 그렇지요? 맞아요? 연어회 먹었고……

○송석준 위원 갈비탕값보다 싸대요.

○위원장 서영교 ‘애월연어’는 회덮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어와 회덮밥 이걸 인정하고?

○송석준 위원 그것은 본인이 인정해요, 그런데 술은 들어간 적 없고.

○위원장 서영교 그걸 본인이 인정했어요, 박상용 본인이?

○송석준 위원 예, 그럼요. 회유한 적은 없고.

○위원장 서영교 거기 가서?

○송석준 위원 예.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국민의힘 두 분 했으니까요 더불어민주당 두 분 하시고 그다음에 윤상현 위원 하시고 그렇게 가지지요.

그러면 전현희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하시고 하셔도 되겠습니까?

○전현희 위원 예.

○위원장 서영교 사실 지금 중요한 역할을 띠고 계시는데, 그런데 영상이 먼저 한번 나오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김동아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현희 위원님 하시고 윤상현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박상용 검사가 우리 법사위에서 위증한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15시0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0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다음, 교도관들 증언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편집이 안 돼서……

○위원장 서영교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15시0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0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재밌는데 더 틀지.

(웃음소리)

○김동아 위원 ‘연어·술 파티도 없었다. 외부 음식 반입도 없었다. 쌍방울 직원도 없었다. 진술 세미나도 없었다. 진술을 회유한 적도 없었다’. 모두가 거짓말이고 뻔뻔한 위증임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법사위와 국민을 속인 정말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최근 국정조사에서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겠습니까? 본인의 이런 범죄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바로 거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범죄를 감추고 위증을 감추기 위해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는 어떻습니까? 여기 국회에 나와서 ‘연어랑 술이랑 있었다’라는 그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위증죄로 기소하고 재판받고 아직까지 재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왜 단죄를 못 합니까? 명확히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저는 늦었다라고 봅니다. 아까 송석준 위원님께서 ‘왜 이제야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저 말 나오는 즉시 우리 법사위에서 위증죄로 고발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생생한 증언들이 더욱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도관들의 증언,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록, 이런 생생한 증거와 객관적인 증인이 차고 넘치는데 우리가 이것을 묻어 놓고 넘어갈 수 있는 게 과연 법치주의에 맞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 위증죄는

당연히 고발해서 박상용 검사 처벌하게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동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상용 검사가 국민의힘에서는 회덮밥은 인정했다고 하고, 몇 가지 인정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당시에 여러 번 물었는데……

○윤상현 위원 인정하지는 않았어.

○나경원 위원 인정한 건 아니에요.

○위원장 서영교 송석준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김용민 위원 송석준 위원님이 인정했다고 했어요.

○박균택 위원 아까 연어값이 싸다고까지 변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윤상현 위원 아니, 인정은 안 했어.

○위원장 서영교 속기록을 다시 한번 체크할까요?

○조배숙 위원 아니, 송석준 위원님이 말씀을 자꾸……

○윤상현 위원 인정하지는 않았어.

○박균택 위원 연어값이 싸다고 변명까지……

○위원장 서영교 거기서도 인정을 안 했어요?

○윤상현 위원 인정은,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위원장 서영교 거기서도 인정을 안 했고. 그런 얘기가 거기서는 없었군요.

○윤상현 위원 예.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송석준 위원 이분이 여기서 지금 보여 준 녹취록에서 부정한 것은 술파티를 안 했다는 거지요, 술파티.

○위원장 서영교 지금 박상용 검사가……

○송석준 위원 통상적인 점심을 먹었대요, 통상적인 점심.

○위원장 서영교 그렇지요. 통상적인 점심을 먹었대요?

○김용민 위원 저녁이야, 저녁. 이것은 저녁이에요.

○나경원 위원 통상적인 밥을 먹은 거지.

○위원장 서영교 이것은 저녁이고?

○송석준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술파티를 하면서 회유하는 술파티, 파티는 안 했다 이거예요, 파티는.

○위원장 서영교 파티.

○박균택 위원 연어까지는 맞군요.

○송석준 위원 통상 검사들이 같이 하다 식사 시간에는 식사를 같이 한다며요.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거예요, 식사를.

○위원장 서영교 여러분, 감옥에서 검사가 부릅니다. 감옥에서 검사가 불렀는데 커피 한잔만 줘도 황홀합니다. 감옥에서 검사가 불렀는데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으면 그것은 파티입니다. 감옥에서 검사가 불렀는데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커피가 있고 테이크아웃 커피까지 있고 담배가 있고 소주가 있고 회덮밥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파티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걸 왜 파티라고 그래요?

○위원장 서영교 중요한 것은 검사는 이렇게 외부 음식을 반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윤상현 위원 안 되지요.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 서영교 같이 모아 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됩니다.

이 정도 정리를 하고 다음.

○나경원 위원 술을 인정한 적이 없잖아요, 교도관들이. 아니, 술파티라고 안 하고……

○김동아 위원 아니, 그런데 너무 명백하잖아요.

○나경원 위원 옛날에는 대변 얘기도 하더니 하여간 진짜 술파티부터 시작해서 박상용 검사를 얼마나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송석준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대변 얘기가? 어제 대변 얘기 나왔는데 그것은 완전 허위사실에 의한 모독죄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한번 더 틀어 볼까요, 금방 그 영상?

○이성윤 위원 틀어 보세요.

○나경원 위원 요새는 안 하시데, 대변 얘기는.

○송석준 위원 그것 한번 좀 틀어 봐요, 이성윤 위원님.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나경원 위원 그렇게 사람을……

○위원장 서영교 나경원 위원님, 감쌀 걸 감싸세요. 다 나왔잖아요. 터세요, 털어.

○나경원 위원 아니, 술을 교도관들…… 교도관들도 술 얘기를 안 했잖아요. 이것은 완전 허위……

○곽규택 위원 지금 그때 당시에 물어본 취지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장내 소란)

○위원장 서영교 잠깐, 그러면 한 번 더 틀까요?

김용민 위원이 뭐라고 묻냐 하면요, 김용민 위원이 ‘회덮밥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경원 위원 언제 회덮밥이라고 그랬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외부 도시락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송석준 위원 전체적인 맥락을 보세요, 맥락을.

○김용민 위원 제가 다 물었어요, 그렇게.

○나경원 위원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술파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파티.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아닌 걸 자꾸 묻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 걸 가지고 우리는 위증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김동아 위원 감싸실 걸 감싸야지.

○송석준 위원 회유를 위한 진술 세미나, 술파티, 연어회·술 파티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부정한 거지.

○나경원 위원 술파티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아니, 그런 논리라면 우리도 맨날 파티예요.

○위원장 서영교 나경원 위원님 나중에 다시 발언 기회 드릴까요?

○나경원 위원 예, 다시 주세요.

○위원장 서영교 우선 전현희 위원 이야기하시고요. 전현희 위원 이야기하시고요.

○나경원 위원 여기도 맨날 파티야.

○김기표 위원 여기서 파티하면 누가 문제 삼습니까?

○나경원 위원 여기 지금 위원장님이 자리를 만들었다면서요.

○위원장 서영교 잠깐 좀 조용히 해 보세요, 좀!

○곽규택 위원 마이크는 지금 거기만 켜져 있어요, 지금.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조용히 해 보세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 법무부 검사 결과보고서에는 이 전 부지사가 불투명 페트병에 담긴 소주를 종이컵에 따라서 김성태 전 회장이 마셨다, 그래서 실제로 술파티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보고서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연어는 있었지만 술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박상용 검사는 술 자체는 없었다라는 식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법사위에서 박상용 검사에게 직접 그때 당시에 ‘술을 반입했냐?’ 질문을 했을 때 ‘술 반입이 없었다’ 그때 선서를 한 당사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위증이고, 왜 위증인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때 교도관들 진술도 동료 수용자들 또한 이 전 부지사로부터 ‘검사와 김성태 회장과 한잔했다’ 이런 말을 직접 들었다라는 자술서 또한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연어·술 파티로 특정된 2023년 5월 17일 김 전 회장의 녹취록을 보면 실제로 술파티가 있었다라는 것을, 정황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김성태의 녹취록을 보면 ‘오후에 상웅이보고 정확히 좀 알아 놓으라고 해. 오늘 중요한 날이야. 그래서 오늘 진실대로 가야지. 엄청난 도박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소주라도 한잔 먹고 가서 이야기하면 편할 텐데. 물 있잖아, 석수 같은 것.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해’ 그렇게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소주병·물병을 가리키며)

그래서 이날 오후에 6시 34분, 37분 수원지검 편의점에서 김 전 회장을 수발하는 앞에 김성태가 언급한 ‘상웅이’, 박상웅이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소주와 물을 결제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때 당시에 수원지검 근처에 있는 이마트에서 결제한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소주 세 병과 생수 세 병을 삽니다. 소주 세 병은 5400, 생수 세 병은 2100, 그리고 담배도 삽니다. 그리고 소주 세 병의 경우에는 1080ml, 360 곱하기 3 하면 1080ml가 되고요. 생수 세 병은 1500ml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은, 소주를 석수병에 담았을 때 약 한 500ml가량 남게 되지요. 그래서 끝이어서 똑같은 카드로 6시 37분에 추가로 소주 한 병을 더 삽니다. 그래서 소주 한 병을 더 사서 이 소주 네 병과 석수 세 병을 합치면 거의 일치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약간 남으면 의심할 수 있으니까 소주 한 병을 더 추가해

서 여기 석수병에 소주를 담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김성태의 녹취에도 있고 또 법무부의 자료에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박상웅이 같은 날 6시 32분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퇴실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 소주를 산 시간은 6시 34분입니다. 박상웅이 퇴실을 한 시간은 32분 그리고 소주를 산 시간은 34분입니다. 그리고 박상웅이 소주를 직접 샀는지 누군가가 사서 전달을 했는지는 모르나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41분에 입실을 합니다. 그래서 근처의 이마트에서 소주와 물을 산 시간 그리고 또 다시 입실을 해서 13층의 박상웅의 검사실에 간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실 근처에 있는 이마트에 가서 소주와 물을 사서 이 소주를 여기 석수병에 담았다고 추정이 되고요. 왜냐하면 소주병은 검열에 걸려서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석수병에 담아서 옮겨 간 걸로 추정이 되고 시간 자체가 정확하게 이마트에서 소주를 구입한 시간……

○위원장 서영교 1분 더 드리세요.

○전현희 위원 엘리베이터 타고 13층으로 검사실로 올라간 시간이 정확히 일치가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도관들과 또 수용자들이 같이 당시에 소주를 마셨다라는 그런 진술을 들었다라는 진술이 정확한 걸로 보아서, 이런 증거와 정황으로 봐서 이날 연·술 파티가 있었다 그리고 술이 반입이 됐다라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정확하다. 그리고 이것을 부인하는 박상웅 검사의 주장은 위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상현 위원 대단히 연구 많이 하셨네.

○송석준 위원 추정이고 상상이잖아요. 물증이 지금 없잖아요, 물증이.

○김용민 위원 딱 떨어지네요.

○전현희 위원 이게 물증입니다.

○박균택 위원 부피와 액수가 딱 맞아떨어지네요.

○박은정 위원 영수증이 있어요, 영수증이.

○김기표 위원 이런 걸 물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곽규택 위원 소주를 따 보세요. 따 가지고 종이컵에다 부어 보세요.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나경원 위원 한번 따서 넣어 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박은정 위원 뚜껑을 따는데 무슨 냄새가 나요?

○박균택 위원 아니, 밖에서 해 왔지.

○곽규택 위원 술을 종이컵에 따랐다면, 그날.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그날 종이컵에 따라서 그 냄새를 교도관이 맡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진술에 나오지요.

자, 다음.

○곽규택 위원 술 냄새 하나도 안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경원 위원 아니, 7시에 도착한 설주완 변호사가 냄새를 못 맡게 다 환기했다며요.

○위원장 서영교 들고 올 때는 냄새가 안 나게 들고 오고 가서 따랐더니 냄새가 나더라 이렇게 진술이 돼 있어요. 마저 더 보시고……

윤상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윤상현 위원 예.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최혁진 위원님 그다음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오전에 대체토론에서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께서 우리 쪽에 있는 위원들이 박상용 대변인이나 그랬는데, 박상용 대변인이 아니라 이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민의 대변인이다라는 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박상용 검사 위증 고발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위증 고발로 해서 박상용 검사를 조작검사, 회유검사로 낙인을 찍고 이제 위증검사까지 만들어서 한마디로 정치적 사냥을 하겠다, 마녀사냥을 하겠다는 거다. 그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목적, 이게 만천하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증 고발에 반대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증 고발의 근거라는 게 서민석 변호사하교의 일부 녹취록, 교도관 진술, 법무부 검찰 문서 등인데 사실 서민석 변호사 녹취록도 일부만 제시했지 전체가 제시되지 않았고요 교도관 진술 등 사실관계가 아직 다툼이 많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박상용 검사는 국회의 국정조사 증인신문 절차도 아직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인신문 절차도 진행 안 됐는데 위증 고발한다는 것은 법사위가 나서서 한마디로 입틀막 고발을 하겠다는 거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국회가 위증으로 단정 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결국 법사위, 입법기관이 정치적 재판기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위증 고발하면 결국 법사위가 완전히 입법 독재하는 것에 별반……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반대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의해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날 국조특위에서 선서 거부와…… 할 권리가 있지요, 또 이유를 소명할 기회가 있는데 그게 주어지지 않았고.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나와 있는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박상용 검사가 여기든 아니면 국조특위에서 진술을 할 수 있는 소명 기회를 줘야 된다.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 또 서민석 변호사의 전체적인 녹취록 등등등 우리 쪽에서 주장하는 여러 증인들에 대한 얘기 또 그분들에 대한 채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위원장님.

그래서 전체적으로 박상용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검사고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증 고발한다는 것은 결국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개입하는 거고 압박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한 특정인의 공소취소를 위해서 전부 다 집단적으로 한 검사에 대해서 테러행위를 하는 거나 매한가지다, 그래서 절대 반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상식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2018년 4월 27일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비핵화 선언 이후에 대북 러시 사업을 전부 전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해 9월 달에 최문순 지사 또 박원순 시장, 같이 대통령 따라가지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만 못 따라가셨지요?

그즈음에, 7월 달에 이미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들였지요. 그래서 대북사업을 합니다.

이분이 대북사업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쌍방울 김성태 회장하고 예전부터 아주 좋은 관계예요. 그 속에서 대북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평화부지사가 대북사업을 위해서 했는데 쌍방울하고의 관계를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보고 관여해야 되는 게 상식적이고.

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소취소를 한다…… 그리고 공소취소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공소취소가 되어 버리면 북한은 방북에 대한 일체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명운이 북한 손에 넘어간다. 그래서 국익적 차원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재판에 넘기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주가 부양이라는 것도 이재명 지사가 방북한 다음에 주가 부양이 훨씬 더 잘되지 북한을 뭘 믿고 주가 부양으로 돈을 주겠냐.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공소취소를 하는 게 그게 우리 국익적 차원에서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재판에 맡겨 두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측면에서 위증 고발도 같은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최혁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최혁진 위원 저는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들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논리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한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상용 검사를 국회증감법에 의해서 우리가 고발을 하자라고 하는데, 일단 녹취록도 나왔고 관련 증거들이 나왔고 진술까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박상용 검사를 옹호하시는 논리 자체가 저는…… 본인들의 논리에 따르면 거꾸로 가야 돼요, 더 많은 증거가 나와야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상용이나 검찰이 단지 진술 하나 가지고 당시 야당의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지금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것 자체를 오히려 혼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진술 하나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더군다나 야권의 대표주자인 분을 그렇게 몰아낼 수 있었느냐.

그다음에 검찰도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쪽팔린…… 저는 녹취록 들으면서 ‘대한민국 검찰이 거의 밑장을 보여 주는 구나’, 아무 증거가 없으면 진술을 구걸하고 있잖아요, ‘제발 좀 자백을 해 주세요. 제발 좀 그렇게 증언해 주세요. 당신이 받아야 될 다른 형량들을 다 날려 드릴 테니까 그 진술 하나만 해 주세요’. 그것은 정말 대한민국 대표의 검찰조직이 얼마나 쪽팔린가를 보여 주는 겁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가서 기껏 하는 것이 제발 진술 하나만 해 달라라고 한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지금까지의 논리를 같이 연동해서 동일하게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적용한다면 박상용을 혼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런 짓을 했냐, 어떻게 진술만 가지고 증거도 없이’. 더더군다나 주요 진술인 중의 하나인 김성태조차도 지금 진술을 바꾸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검찰을 혼내고 박상용을 혼내고 고위공직자가 국민을 상대로, 야당 대표를 상대로 이런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엄단해야 된다고 먼저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어회덮밥 가격이 얼마나’ 이런 얘기 하실 때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연어회덮밥이다라고 하는 걸로 한자리에 모아 놓고, 김성태·이화영·방용철·안부수까지 모아 놓고 진술을 짜맞추기 했더라는 그 상징이 연어회덮밥이고 소주인데 그것을 갖다가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회덮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가 아니라 그런 자리 자체를 부인한 거기 때문에 중대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벌을 해야 되는 건데 ‘밥값이 얼마나?’……

아니,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어린 여학생이 분식집에 가 가지고 앉아서 라면 먹고 있는데 온몸에 문신한 조폭이 와 가지고 앞에 앉더니 ‘나, 네 라면 같이 먹어도 되겠어?’ 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검사가 얼마나 무서워요. 내 형량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앉혀 놓고 ‘연어회덮밥 먹어. 소주 한잔 먹어. 말만 잘하면 너 10년 살 수도 있고 5년 살 수도 있고 내일 나갈 수도 있어’……

얼마 전에 어떤 연세가 있으신 여성분이 참고인 조사하러 경찰에 갔다 왔는데 참고인으로 갔을 뿐인데도 너무 무서웠대요. 우황청심환을 먹고 갔는데도 수사받고, 5시간인가 조사받고 나왔더니 혈압이 갑자기 180으로 뛰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그게 문제라는 것을 아니까 거짓증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엄벌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뉴스 찾아보니까 박상용 검사를 ‘거악과 맞서 싸운 검사’라고 표현하셨어요, 거악과. 오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국민을 상대로, 야당 인사를 상대로 거짓 진술 압박하고 회유하고 그런 공직자는 부패·비리 공직자예요. 그 자체가 거악인데 그 사람을 갖다가 단죄하자라는 것을 거악과 맞서 싸운 검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부패·비리 공직자를 단죄하자라는 사람들을 몰아세우면 도대체 국민의힘은 뭐예요?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긴 얘기 안 드리고, 이런 비위 혐의가 드러났으니까 단호하게 고발을 해서 법적조치를 받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대체토론을, 토론을 끝내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들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퇴장하시게요?

○조배숙 위원 예, 우리는 퇴장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끝까지 있어야지요.

○위원장 서영교 의결 같이 하시지요.

○곽규택 위원 표결하실 동안 퇴장입니다. 표결에 반대해요.

○박균택 위원 처음부터 오지 마시지. 시간 다 끝다가……

○송석준 위원 아니, 조작 국정조사특위를 하시더니 법사위로 돌아와서도 이렇게 조작 위증 고발하시면 안 되잖아요, 시간차공격하면서. 이것 반칙이에요, 반칙.

○박균택 위원 윤석열 하나면 됐지 박상용까지 그렇게 목을 다십니까?

○김용민 위원 조작은 박상용이 했지요.

○이성윤 위원 언제부터 국힘이 박상용 한 사람한테 목매달았어요? 그렇게 중요한 분이었어요?

○장경태 위원 회덮밥이나 사 오세요.

○박은정 위원 다음에 회덮밥 좀 사 오세요.

○송석준 위원 이미 국감 때도 아무 문제없다고 넘어간 분을, 갑자기 이것을 지금 끄집어내서 이렇게 시간차 반칙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서영교 다 같이 하시지, 왜 또……

○이성윤 위원 같이 하고 가요.

○박은정 위원 연어회덮밥 좀 사 오세요.

○송석준 위원 시간차 반칙하지 마세요.

○위원장 서영교 아니, 내가 뭘 반칙했다고 그래요, 지금? 1분 더 줘요?

(웃음소리)

(일부 위원 퇴장)

그러면 나가셨으니까 제가 준비한 것 한 번만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위증, 위증, 위증. 기가 막히게 위증을 했습니다. 얼굴이 하나도 안 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이 하나도 안 변하고 더 눈을 또렷이 떠요. 그리고 턱을 더 치켜들어요. 그 모습으로 검사실에서 협박을 하면서 ‘네 부인은 구속이야. 네 아들도 구속이야. 이해찬도 구속이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구속이야. 거기에 이재명도 주범이야’라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위증을 넘어 그가 얼마나 나쁜 패악질을 했는지 이 자리에 그제 세상에 흘러나왔고 무서워 덜덜 떨던 이화영 의원이 고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화영은 평범한 사람보다 더 무서웠을 거예요. 왜? 주변에 지켜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재명, 이해찬, 모두 치고 들어오니까.

위증한 그날 소주와…… 전현희 위원님이 소주병을 갖고 오셨는데요. 그리고 석수병을 갖고 오셨는데요. 생생합니다.

(영수증을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국회에 있는 마트에 가서 한번 사 봤어요. 소주가 한 병에 얼마입니까? 18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병 사니까 7200원, 이것 지금 계산서입니다, 7200원.

그날 왜 소주가 들어갔는지 한번 국민 여러분께 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워 보시겠어요?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김성태가 쌍방울 직원하고 접견을 하면서 그때 남긴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나올 줄 그때는 몰랐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상용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상용이의 5월 17일 날 출입기록이에요, 검사실. 전현희 위원이 아까 공개한 거지요. 상용이의 출입기록이고요. 상용이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박상용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일 없다고. 박상용의 출입기록 5월 17일, 이게 박상용 5월

17일…… 수원지검 박상용, 둘이 이름이 비슷하네.

13층입니다. 6시에 들어가서 8시까지 있고 그 전에 6시 32분까지 있습니다. 박상용이 1시부터 계속 있습니다, 거기에. 1시 50분, 51분, 2시 2분, 2시 4분, 2시 5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심부름을 계속 하는 장면이에요. 1시 50분, 1시 51분 입실…… 2층에서 들어와서 13층으로 갔다가 2시 2분에 13층에서 다시 나왔다가 2시 4분에 또 나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에요. 절정인 것은 6시 41분에 들어와서 8시 34분, 이때 연어파티와 소주파티가 있습니다.

다시, 김성태 것 틀어 봐 주십시오.

김성태가, 이게 5월 17일 날 오전입니다, ‘오후에 상용이보고 정확히 좀 알아 놓으라고 해. 아무튼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오늘 결전의 날이야, 사실은. 이화영이 오늘 대질하는 날이야. 소주라도 한잔 먹고 가서 이야기하면 편할 판인데. 내가 변호사한테 얘기해 봤으니까 물 있잖아, 석수 같은 것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쌍방울 직원들의 카드내역서를 짹 추적하게 된 겁니다. 그 카드내역서를 짹 추적했더니 5월 17일 날 1만 2100원 그리고 1800원 계산서가 나오게 된 겁니다.

1800원은 뭐지요? 수원지검 바로 옆에 있는 이마트24 광고법원점에서 1800원, 저것은 쌍방울 법카 내역서입니다. 그리고 1만 2100원…… 석수 얼마지요? 담배가 들어가요. 담배 4500원, 소주 5400원, 생수 세 병 2100원, 다 하나씩 1만 2000원이거든요. 거기에 100원은 비닐값입니다, 비닐봉투. 그래서 1만 2100원. 그리고 하나 더 사지요, 1800원 소주. 그래서 우리 전현희 위원이 소주 4병에 석수 3병을 가지고 온 겁니다. 오늘 잘 봐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더 확실하게 위증을 짚고, 어떻게 뻔뻔스럽게 들어와서 거짓말을 합니까? 이외에 거짓말이 훨씬 더 많아요. 교도관하고 싸웠냐 했더니 교도관하고 싸운 적 없다. 그런데 교도관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싸워서 두 번 퇴장당했다라고.

그러면 이 안전에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혹시……

○박지원 위원 제가 한말씀……

○위원장 서영교 박지원 대표님이 지금 막 오셨는데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토론이 아니고요. 지금 사법부에서 전광훈 목사를 보석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건강 문제로 보석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도가 안 돼 가지고 많이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전광훈 목사가 또 집회하고 난리 치러 다닐 거냐.

그런데 이번 보석 조건은 주거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병원하고 집, 병원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병으로 하고. 변호인 외에는 접촉을 하지 마라 그런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만약 전광훈 목사가 보석 조건을 일탈하면 다시 수감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알고 전광훈 목사가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증인 고발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발장의 작성 등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위증으로 고발조치 해 놓지 않으면 술이 들어왔고 연어가 들어왔고 진술 세미나가 들어왔다고 고백을 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법적조치 되어 있어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렇다면 여차하면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어 저희도 법적조치 해야만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마디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곽규택 김기표 김동아 김용민 김재섭 나경원 박균택 박은정 박지원 서영교
송석준 신동욱 윤상현 이성운 장경태 전현희 조배숙 최혁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권한대행 기우종